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
2025. 6. 24.(화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(문화환경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검 토 보 고

I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79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II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50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4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III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
○ 관련서류 : 2024회계연도 결산서(안)

IV. 문화환경국 결산

1. 문화환경국 결산 총괄

가. 세입 총괄

(단위:원)

구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 (B/A)
계	18,765,114,000	19,023,898,180	18,560,951,100	97.5%
문화체육과	11,035,185,000	10,426,158,180	10,425,229,790	99.9%
청소행정과	7,254,165,000	7,921,370,370	7,643,348,270	96.4%
환경과	334,214,000	321,447,370	311,494,070	96.9%
부동산정보과	141,550,000	354,922,260	180,878,970	50.9%

나. 세출 총괄

(단위:원)

부서명	예산현액(A)	지출액(B)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
				금액	집행률 (B/A)
계	89,326,743,880	75,994,413,185	6,955,144,050	6,139,952,185	85.1%
문화체육과	40,742,523,880	32,275,389,075	6,018,994,050	2,262,574,425	79.2%
청소행정과	45,732,999,000	41,148,663,210	919,650,000	3,621,856,080	90%
환경과	2,364,158,000	2,174,404,390	16,500,000	165,030,190	91.9%
부동산정보과	487,063,000	395,956,510	0	90,491,490	81.2%

다. 집행잔액

(단위:원)

부 서 명	예 산 현 액	집행잔액	사유별		
			보조금 정산잔액	예산절감액	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
			낙찰차액	지출잔액	예비비
계	89,326,743,880	6,139,952,185	150,553,800	5,092,000	1,045,258,400
			634,618,580	4,304,429,405	0
문화체육과	40,742,523,880	2,262,574,425	106,418,000	2,368,000	829,821,790
			83,020,220	1,240,946,415	0
청소행정과	45,732,999,000	3,621,856,080	40,561,830	1,326,000	106,313,290
			541,169,260	2,932,485,700	0
환경과	2,364,158,000	165,030,190	3,573,970	903,000	34,123,320
			9,314,100	117,115,800	0
부동산정보과	487,063,000	90,491,490	0	495,000	75,000,000
			1,115,000	13,881,490	0

라. 집행률 저조사업

(단위: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예산현액	지출액	집행잔액	집행비율
문화체육과	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	7,433,679,340	4,471,632,820	2,879,733,180	61.3%
	문화산업 관리	10,130,000	6,575,000	3,555,000	64.9%
	관광활성화	34,370,000	3,674,610	30,695,390	10.7%
	금빛공원 열린광장 내 맑은누리작은도서관 조성	101,784,000	-	101,784,000	0.0%
	축구교실 운영	75,560,000	48,552,630	27,007,370	64.3%
	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	3,500,000	-	3,500,000	0.0%
	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	271,150,000	60,240,880	210,909,120	22.2%
	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(검도단) 운영	520,373,000	-	520,373,000	0.0%
	독산 어르신 체육센터 운영	222,956,000	48,385,290	174,570,710	21.7%
	박미빛물품프장 소규모체육센터 건립	303,556,200	12,855,500	290,700,700	4.2%
	금빛휘트니스센터 리모델링	1,870,456,000	48,361,000	1,822,095,000	2.6%
청소행정과	음식물쓰레기 감량화	153,016,000	104,004,000	49,012,000	68.0%
	주민과 함께하는 청결도시 금천 조성	23,980,000	15,247,200	8,732,800	63.6%
	자원순환보증금제	300,000	-	300,000	0.0%
	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	909,000,000		-	100.0%
부동산정보과	중개업소 관리	100,896,000	24,711,570	76,184,430	24.5%
	개발부담금 부과	6,440,000	3,328,800	3,111,200	51.7%

2. 예산의 전용

(단위: 원)

부서명	통계목	예산액	전용금액		사유
			감 액	증액	
문화체육과	생활체육 시설 지원	13,000,000	7,857,000		문화체육과-38354(2024.11.19.) 호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예산 전용 함
	생활체육 시설 지원	15,410,000		7,857,000	
청소행정과	일반쓰레기 수집·운반 대행	19,262,431,000	75,000,000		실시간 이동식 CCTV 및 AI CCTV를 구입하여 골목 간에 확대 설치를 위해 전용함
	무 단 투 기 CCTV 설 치·운영	366,500,000		75,000,000	
청소행정과	청 소 차 량 구매 및 유 지관리	349,970,000	3,000,000		도로물청소 용수비 납부를 위한 구비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전용
	도로물청소 실시	77,000,000		3,000,000	

3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	명시이월		사고이월	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계	16	6,955,144	13	3,164,140	3	3,791,004
문화체육과	13	6,018,994	11	2,244,490	2	3,774,504
청소행정과	2	919,650	2	919,650	-	
환경과	1	16,500			1	16,500

4. 기금 결산

(단위: 원)

구 분	전년도말 조성액(A)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 성 액
		계B(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계	819,141,748	47,439,650	86,630,276	39,190,626	866,581,398
환경 공무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	471,434,675	7,441,810	30,569,210	23,127,400	478,876,485
재활용품판매대 금 관 리 기 금	347,707,073	39,997,840	56,061,066	16,063,226	387,704,913

5. 성과 보고

(단위: 원)

부서명	성과목표						결산액		
	전략 목표수	정책 사업목표		성과달성도			결산액	전년도 결산액	비교증감
		개수	지표수	초과 달성	달성	미달성			
계	4	8	15	3	11	1	75,994,413,185	61,092,223,077	14,902,190,108
문화체육과	1	2	4	0	4	0	32,275,389,075	21,822,889,367	10,452,499,708
청소행정과	1	1	4	1	3	0	41,148,663,210	36,652,604,170	4,496,059,040
환경과	1	4	5	2	2	1	2,174,404,390	2,305,897,020	-131,492,630
부동산정보과	1	1	2	0	2	0	395,956,510	310,832,520	85,123,990
건축과	1	1	3	0	3	0	447,304,560	440,881,040	6,423,520

가. 주요성과

- 지역기반의 문화예술정책 추진으로 일상 속 문화 누림 확대
 - 문화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실시 및 2024금빛하모니축제, 정조대왕 능행차 실시
 - 호암산성 역사문화길 조성 : 제2우물지 및 남쪽 건물지 발굴조사 준공
 - 해피워킹 금천한가족 건강걷기 행사 개최
- 폐기물 자원순환으로 쓰레기 제로화
 -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한 RFID 종량기 설치 : 116대
 - 주민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 목표량 달성
-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으로 기후위기 대응
 - 금천구 기후위기대응 2030종합계획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비 140% 달성
 -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건립 운영을 통한 구민에 필요한 에너지교육,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
- 구민 편의 중심의 맞춤형 토지정책 실현
 - 체계적 효율적 측량기준점의 관리로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
 -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점검 및 정확한 부동산 거래관리 운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

나. 정책사업목표 현황

(단위 : 원)

정책사업목표	성과 지표수	달성 지표수	단위 사업수	결산액
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성화, 역사문화지어른 발굴 보존 및 활용, 책임있는 도시 활성화	3	3	3	16,836,508,745
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	1	1	2	8,880,532,260
폐기물 자원순환으로 쓰레기 제로화	4	4	7	31,248,310,770
탄소중립 생활실천, 기후위기 대응능력 향상	1	1	1	235,988,720
체계적인 관리로 녹색사업장을 구현	1	1	1	957,028,060
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·소음 관리 강화	2	2	1	399,113,530
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	1	0	1	329,501,170
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	2	2	4	331,127,020

V. 검토의견

1. 세입·세출 결산

- 2024회계년도 문화환경국 세입결산액은 185억 6,095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징수률은 97.5%이며,
- 세출 결산액은 759억 9,944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.1%이며,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억 5,514만원이며,
- 집행잔액은 총 61억 3,995만원으로
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정산잔액 1억 5,055만원, 낙찰차액 6억 3,461만원, 예산절감액 509만 2천원, 지출잔액 43억 442만원
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4,525만원임.

2. 예산의 전용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9조 규정에 따른 문화환경국의 예산전용은 문화체육과 1건 785만 7천원, 청소행정과 2건 7,800만원 임.

3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-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,
 - 명시이월은 총 13건 31억 6,41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.
 - 사고이월은 총 3건 37억 9,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.

4. 기금 결산

○ 문화환경국 소관 운용 기금은 2개이며 결산내역은

- 전년도말 조성액은 8억 1,914만원이며
- 당해연도 증감액은 4,743만원이며
-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억 6,658만원임.

5. 성과 보고

○ 전략목표 :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역사문화도시 탄소중립도시 금천

문화환경국은 1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정하였고,
성과지표 13개를 달성함.

6. 검토 의견

○ 2024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세입·세출 결산 검토 결과,

예년과 큰 차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, 매년 발생하는
이월 사업에는 보다 적극적인 집행으로 이월액을 줄여야 할 것임.

부서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
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
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☞ 예산·결산 자료

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50조(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91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제49조(예산의 전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·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,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6. 9.>
-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·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,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 [전문개정 2011. 8. 4.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

-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
 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3.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 4.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
[시행 2024. 4. 16.] [대통령령 제34408호, 2024. 4. 16., 일부개정]

- 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16.>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. <개정 2024. 4. 16.>

📁 기금 관련 자료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